고 창 군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	기관(부서)의 장
람	



제689호 2023. 9. 01.(금)

1

【예 규】

○ 고창군 예규 제13호 고창군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개정 지침

【고 시】

- 고창군 고시 제2023-126호 고창군 택시운임·요율 조정 고시 6
- 고창군 고시 제2023-128호 중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7

【공 고】

- 고창군 공고 제2023-1606호 노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분묘 개장 공고 ₁₂
- 고창군 공고 제2023-1638호 '고창 아기황새 3마리 이름을 지어주세요' 14
- 고창군 공고 제2023-1667호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15
- 고창군 공고 제2023-1670호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 운 18

회				
람				

발행 고 창 군(편집 행정지원과 ☎ 063-560-2326)

고창군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을 발령한다.

고창군수

2023년 8월 22일

고창군 예규 제13호

고창군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개정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단속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한 주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.

제2조(단속 원칙) ① 불법 주정차 단속(이하 "단속"이라 한다)은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에서 정한 바에따라 실시하다.

② 단속은 주민의 안전과 교통 흐름,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3조(단속 구분 및 기준) ① 단속은 인력(수기), 주행형카메라(차량탑재형), 무인 단속카메라(고정형) 및 주민신고제(안전신문고 앱 이용)로 할 수 있다.

② 인력(수기) 단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단속 시간
- 가. 평일 09시 ~ 18시(주말, 공휴일 제외)
- 나. 다만, 교통 소통 상황ㆍ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여 단속할 수 있다.
- 2. 단속 대상
- 가. 법 제3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지역
- 나. 어린이 ·노인 · 장애인 보호 구역
- 다. 자전거도로
- 라.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(이중주차, 대각선 주차 등)
- 마. 그 밖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
- 3. 단속 방법
- 가. 단속원이 위반 차량을 발견할 시 위반 차량을 1차로 촬영한 후 동일 장소에서 20분 후 2차로 촬영해 단속한다.
- 나. 다만, 단속 중 운전자가 복귀하거나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단속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③ 주행형카메라(차량탑재형) 및 무인감시카메라(고정형) 단속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단속 시간
- 가. 주행형카메라(차량탑재형) : 평일 09시 ~ 18시(주말, 공휴일 제외)
- 나. 무인감시카메라(고정형) : 평일 08시 ~ 20시(주말, 공휴일 제외)
- 다. 다만, 교통 소통 상황ㆍ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여 단속할 수 있다.
- 2. 단속 대상

- 가. 법 제3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지역
- 나. 어린이 ·노인 · 장애인 보호 구역
- 다. 자전거도로
- 라.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(이중주차, 대각선 주차 등)
- 마. 그 밖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
- 3. 단속 방법
- 가. 위반 차량이 1차로 촬영된 후 동일 장소에서 20분 후 2차로 촬영될 경우에 단속한다.
- 나. 무인감시카메라(고정형) 적발 사진의 단속대상 여부(오류 등)는 교통관련 팀원(2명)이 검토한다.
- 다. 다만, 교통 소통 상황·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시간 간격을 달리하여 단속할 수 있다.
- ④ 주민신고제(안전신문고 앱 이용)에 의한 단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단속 시간 : 24시간(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시 ~ 20시 적용)
- 2. 단속 대상
- 가.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
- 나. 도로모퉁이 5m 이내
- 다.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
- 라.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
- 마. 어린이보호구역(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)
- 바. 인도(보도)

- 사. 자전거도로
- 아. 안전지대
- 자.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(이중주차, 대각선 주차 등)
- 차. 가목에서 자목까지의 대상 외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 등이 설 치된 지역
- 3. 신고 방법
- 가. 주민이 스마트폰 앱(안전신문고 앱)을 통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신고한다.(다만, 동영상 신고는 불가하다.)
- 나. 유사한 각도에서 1분 이상 간격의 시차를 두고 2회 촬영해야 하며, 모든 사진 내 위반사실 및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제3조제4항제2호 사목에서 차목까지는 20분 이상 간격의 시차를 두고 2회 촬영한다.
- 다. 사진 촬영일 당일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단속 완화·유예)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장 주변의 단속 완화·유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교통흐름과 보행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단속이 가능하다.
- 1. 시간 : 행사 시작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
- 2. 조건 : 교통 안내 요원을 배치한 후 질서 유지 활동을 할 때
- 제5조(주차 위반 조치) ① 고창군 소속 공무원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이동시키거나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.
- ② 인력(수기)으로 단속 시 '과태료 부과 표지'를 부착해야 하나 주행형카메라(차량탑재형), 무인단속카메라(고정형) 및 주민신고제의 경우 '과태료 부과 표

지'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6조(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) ① 법 제15조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- ②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88조에 따른다.
-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등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제7조(과태료 면제) 법 제160조제4항에 따라 단속부서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결과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1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창군 고시 제2023-126호

고창군 택시운임·요율 조정 고시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된 택시요금기준을 「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·요율 등 조정요령」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시다.

2023. 8. 21.

고 창 군 수

1. 시 행일: 2023. 9. 1.(금) 00:00 부터

2. 조정내용

구 분	구 분	현 행	조 정	비고
	기본운임(2km까지)	4,000원	5,000원	
	거리운임	137m / 163원	134m / 163원	복합할증
T = 1 C11 11	시간운임(15km/h이하 주행시)	33초 / 163원	32초 / 163원	63%적용
중형택시	심야할증(00:00~04:00)	20%	현행과 같음	
	시계외할증	20%		
	호출요금	회당 1,000원		

3. **적용지역** : 고창군 일원

4. 요금적용 방법

○ 기본운임 : 주행거리 2km까지 기본요금 5,000원

○ 거리운임 : 2km초과 134m마다 163원 적용

○ 시간운임 : 운행속도 15km/h이하 주행 시 32초당 163원 적용

○ 할증운임

-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00:00 ~ 04:00시 사이에 운행한 운임에 대하여 20% 추가할증

-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20% 추가할증

○ 호출요금 :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는 경우 1회당 1,000원 적용

5. 요택시미터기 수리·검정 기간 : 2023. 9. 1. ~ 9. 7.

고창군 고시 제2023-128호

중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

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, 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중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08월 22일

고창군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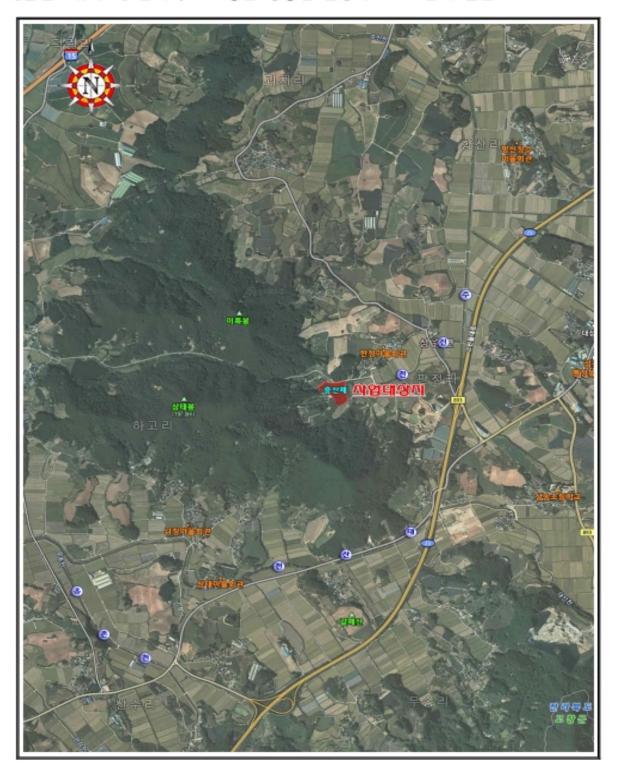
- 1. 사업의 명칭 : 중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
- 공사의 목적 및 개요
- 가. 목 적 : 저수지 시설물 등 노후화에 따른 주요 부재 결합 발생으로 집중호우시 홍수대응능력 부족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주민 및 농경지 등 인명과 재산 피해의 사전방지 목적
- 나. 위 치 :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510-1번지 일원
- 다. 사 업 량 : 제체보강 L=126m, 여수토 및 방수로 정비 L=60m 취수시설교체 1식, 준설 5.331㎡, 관리도로 1식 등
- 라. 사 업 비 : 1,430백만원
- 마. 사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18개월
- 3.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
가. 시 행 자 : 고창군수(건설도시과 기반조성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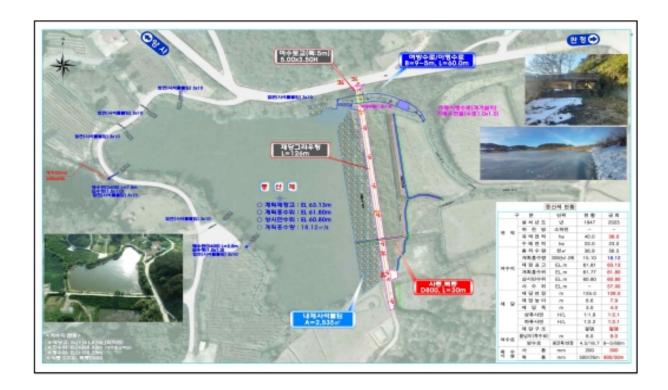
나. 주 소 :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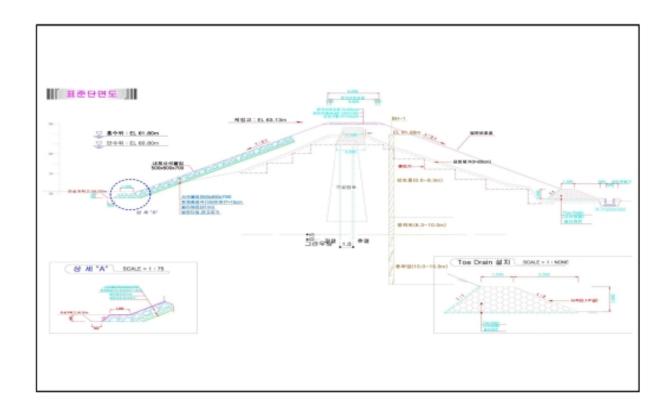
- 4. 착공 및 준공예정 연월일 : 2023년 09월 부터 ~ 2025년 02월 까지
- 5.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와 그 소유자 명세(붙임 '3' 참조)
- 6. 위치도 및 계획도(붙임 '1,2' 참조)
- 7. 준공된 저수지 관리에 관한 사항 : 고창군수
- 8. 실시설계도서 :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열람
- 9. 기타사항 :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건설도시과 기반조성팀으로 (☎ 063-560-255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위치도
 - 2. 사업계획 평면도 1부.
 - 3. 편입용지조서 1부. 끝.

【붙임1 위치도】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510-1번지 일원



【붙임2 사업계획 평면도】





【붙임3 편입용지조서】

중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편입 용지조서

번호			토 지	소 재 지			편입면적	소 유 자		ur ¬
인오	시군	읍면	리	지번	지목	지 적 (m2)	(m2)	주 소	성 명	비고
1	고창	성송	판정	510	답	1,491	252	고창군 성송면	정*성	
2	고창	성송	판정	510-3	답	529	71	고창군 고창읍	이*재	
3	고창	성송	판정	510-5	답	694	11	고창군 고창읍	이*재	

고창군 공고 제2023-1606호

분묘 개장 공고(1차)

노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7조,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, 18조, 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, 연고자 및 관리인은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08월 일

고 창 군 수

- 1.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: 붙임참고(분묘조서)
- 2. 개장사유 : 노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편입
- 3. 공고기간 : 최고공고일로부터 3개월간
- 4. 개장방법 : 공고기간 만료 후 화장하여 납골 안치
 - 가. 유연묘지 :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개장
 - 나. 무연묘지 :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(공고자)임의 개장
- 5. 개장후 안치장소 : 고창군 추모의 집(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)
- 6. 안치기간 : 안치일로부터 10년
- 7. 신고요령: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(호적), 제적, 족보,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서 신고하시기 바라며,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하겠습니다.

8. 기타사항

가. 분묘개장 공고 이전 합의개장된 분묘가 분묘조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- 나. 분묘개장 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- 9. 신 고 처 : 고창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(☎ 063-560-2658)

<u>분 묘 조 서</u>

사업의 명칭 : 노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

사업 시행자 : 고창군청

분묘		소재지	편입								지목	분묘	분묘	구:	분	좌표	표값		지장들	물 (상석 set는 밑판석	l, 북 ⁴	넉, 포함	팔)
번호	호 번호	±4 4	지번	713	형태	좌향	유연	무연	위도(X)	경도(Y)	소분류	종류(구조)	규격(가로*새로*높이)	수량	단위	비고							
1	1A	전북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	397	묘				1			분묘			1	기								

고창군 공고 제2023-1638호

"고창 아기황새 3마리 이름을 지어주세요" 명칭공모 선정 결과 공고

"고창 아기황새 3마리 이름을 지어주세요" 명칭공모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□ 선정결과(선정작)

선정 명칭	공모 선정자	비고
찬란이, 행복이, 활력이	김○정	

※ 명칭 의미 : 찬란하고 행복한 활력이 넘치는 고창이 되기를 기대함

2023. 8. 23.

고 창 군 수

고창군 공고 제2023-1667호

- 주민참여예산제도 -**지역밀착영 주민제안 공모(도비)**

전라북도 및 고창군에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할 지역밀착형 주민 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.

2023년 8월 28일

고창군수

1. 신청자격 : 고창군민 누구나

2. 신청기간 : 2023. 8. 28.(월) ~ 9. 13.(수)까지

3. 공모규모 : 5억원 이내

4. 대상사업

- 지역개발사업(시·군 집행), 주민 공동이용시설(민간보조) 등 지역밀착형 사업
- 지역주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의 재난·재해 예방사업
- 공개경쟁입찰 대상사업(제외 : 건별 5백만원 이하 소액사업)
- 시설비 성격의 기능보강사업(제외: 자산취득비)

부적격 사업

- ▶ 지방자치법, 지방재정법 등 **예산편성**에 관한 **규정 위반**
 - 광역도 사무가 아닌 경우(국가사무, 민간사무/예 : 교육청, 경찰청)
 - 기타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및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
- ▶ 국고보조사업, 국가직접사업, 계속사업 및 기 시행(추진) 중인 사업(중복지원 불가)
- ▶ 이미 설치·운영 중인 시·군 및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비(자산취득비 등) 요구사업
- ▶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(위탁사업 포함)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
- ▶ 매년 **중복**지원사업 및 소액사업(건별 5백만원 이하)
 - 소액사업은 시·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
- ▶ 이미 시행 중이거나 **공연, 축제 행사성**(프로그램) 사업
- ▶ 사전절차 미이행 등 **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**
 - 학술용역 심의, 공유재산 심의,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행한 경우
- ▶ 기 지원된 동일 사업 및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

5. 참여방법 : 방문, 우편, E-mail 제출

- 방 문 : 고창군청 기획예산실 (예산팀) ☎063-560-2248

- 우 편 : (우 56428)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. 고창군청 2층

[기획예산실 예산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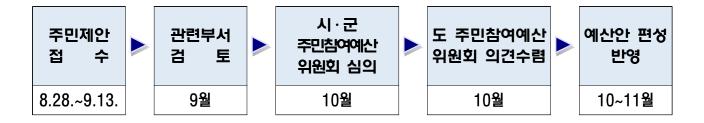
- E-mail : judydadido@korea.kr

6. 제출서류

가. 지역밀착형 도민제안 신청서 (붙임 서식)

나. 현장 사진 등 제안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추가자료

7. 제안사업 선정절차



8. 유의사항

- 가.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공모 부적합사업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며,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나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9. 기타 문의사항 : 고창군 기획예산실 예산팀(☎ 063-560-2248)

[붙임 1]

지역밀착형 도민제안 신청서

0	٧ŀ٤	검제	안 신청인							
신	청	인	소	속 시군						
연	락	처	0	┃ 메 일						
한	체	명	* 단체인 경우 기재 다	H표자성명	※ 단체인 경우 기재					
			개인정보의	의 수집·이용에	관한 사항					
□ 수 □ 기 □ 동 ※	□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도민 제안사업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. (사업 제안에 대한 문의 등) □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: 성명(단체명,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(휴대폰 번호), 이메일 □ 개인정보의 보유, 이용 기간 : 기본 2년(예산편성 사업은 5년) □ 동의 거부 권리 안내 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사업 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. ※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									
			<u> </u>	<u> </u>	함 🗆					
0	MIS	<u>የ</u> ተለተ	업 내용							
사	업 분	- 0 ‡								
사	업	명								
사 '	업 위	치								
소	요예	산	천원							
사	업 기	간	2024 ~	2024.	•					
_	법필요 안취									
사 '	업 내	용	※ 구체적으로 작성, 필요시	별지작성 기	능					
기대	대 효	과								
기		타								
			2023년	월	일					

고창군 공고 제2023-1670호

「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」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.

2023. 8. 29.

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 위원장

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 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 **제2조(구성)** ① 협의회는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의무적 보상협의회에 해당하며, 보상협의 회 위원장은 고창군 부군수로 한다.
-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전북개발 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를 위원에 포함시키고,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제3조(위원장 등의 임무 및 임기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 괄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사업지구 내 보상완료 시 협의회는 해산하며,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.
- ③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장으로 하며, 서기는 도시계획팀 업무 담당자로 한다.
- 제4조(회의 및 협의) ①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에 미리 통지하여 위원들이 안건협의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안건이 경미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 협의회의 협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협의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협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기능) 협의회는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.

- 1.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
- 2.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
- 4.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자료제출 요구) 협의회 위원(위원장을 포함한다)은 안건협의와 관련하여 공사 및 고창군에게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으며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북개발공사와 고창군은 이에 응해야 한다.

제7조(협의의 효력)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사는 보상업무 수행과정에서 적 극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의록 및 의결서) ① 서기는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 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결의를 할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서기는 회의록에 회의의 일시, 장소, 안건, 토의내용, 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 요지를 작성하고, 그 결과를 공사에 알려야 한다.

제9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협의회 의결이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